

#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I. 프롤로그

마야흐로 2008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억 명을 넘어섰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6.5%이고,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36,190,000명이며,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78.4%로 나타났다.<sup>1)</sup> 헌법재판소의 실시처럼, 인터넷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쌍방향성을 지닌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면서 익명성과 전파성을 보유한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까닭에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사상의 자유로운 장<sup>2)</sup>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sup>3)</sup>

## 이 민 영

-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성균관대 법학박사
- (사)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 전, 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인터넷이란 웹(World Wide Web; WWW)으로 상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인터넷은 LAN과 같은 소규모 통신망을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08, pp. 19~31.

2) 사상의 공개시장론(the rationale for open marketplace of ideas)은 John Milton이 영국 정부의 출판검열조치에 반발하여 1644년 검열을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출판한 「Areopagitica: A Speech of Mr. John Milton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to the Parliament of England」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그는 진실과 거짓이 맞붙어 싸우게 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하기 마련이므로 정부의 언론통제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 개념은 1919년 Abrams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에서 “한 사회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보다 쉽게 ‘최고선(ultimate good)’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진리(truth)는 사상의 공개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의 모든 바람은 진리라는 토대 위에서만 안전하게 성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논리이다.”라고 역설한 Holmes판사에 의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원리로 도입되었다.

3)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판례집 14-1, pp. 616, 632.

상호 접속하는 형태에서 현재는 전 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로 발전되었다.<sup>4)</sup> 이러한 인터넷에는 PC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으며,<sup>5)</sup>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전자우편(e-mail), 파일전송(FTP), 인터넷 정보검색(Gopher), 하이퍼텍스트 정보열람, 온라인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이나 음성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역무가 차례로 개발되어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매체역무(media service)와 풍부한 정보자원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 부른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을 위시하여 정보통신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각종 정보의 취급이 확대된 오늘날 이러한 현대 정보사회<sup>6)</sup>가 안겨주

는 사이버스페이스<sup>7)</sup>의 편리함 이면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부작용이 결코 방지될 수만은 없는 현실세계가 엄연히 공존한다. 그러기에 바다를 이루는 인터넷의 정보가 불법적인 경우 기존의 형사법적·민사법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하여 특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역기능의 예방과 제거에 관한 제반논의가 입법적으로 뒤따르게 된다.<sup>8)</sup> 그 가운데 하나로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와 행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영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비방을 통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지위에 피해를 준다는 개념인 명예훼손<sup>9)</sup>이 성립할 경우 구두명예훼손(slander)이 아니라 서면명예훼손(libel)<sup>10)</sup>에 해당하

- 4) 인터넷은 1969년 미국방성 DARPA(Department of Defence'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지원으로 미국의 4개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ARPAnet을 기원으로 한다. 당초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통신규약인 프로토콜로서 TCP/IP를 채택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ARPAnet과 군용의 MILnet으로 분리되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기반을 갖추었다. 한편 미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도 TCP/IP를 사용하는 NSFnet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망을 1986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듬해 ARPAnet을 대신하여 근간망(backbone network)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이리써 인터넷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인터넷을 상품광고 및 상거래매체로 이용하는 상업적 이용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는 NSFnet은 그 성격상 교육 연구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사업자들은 별도의 협회를 구성하여 1992년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라고 하는 새로운 근간망을 구축하여 상용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었으며, 미국의회가 NSFnet을 상용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인터넷통신이 출범하게 되었다; See e.g., Howard Rheingol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3, pp. 70-74.
- 5)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ISOC(Internet Society)가 있으나, 이는 총괄 관리기구가 아니다.
- 6)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란 '정보를 생산도구로 하여 재화나 역무 혹은 정보 및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정보 가치가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See generally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 pp. 15-21.
- 7)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이용자들이 쌍방향적인 소프트웨어로 가득 찬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을 의미한다; See William Gibson, *Neuromancer*, New York: Ace Books, 1984, p. 67.
- 8) Jessica L. Chilson, *Unmasking John Doe: Setting a Standard for Discovery in Anonymous Internet Defamation Cases*, 95 Va. L. Rev. 389, 389-390 (2009).
- 9) Paul Siegel, *Cases in Communication Law*,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8, p. 43;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10)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defamation)은 인쇄된 표현에 의한 훼손인 libel, 비방·연설·회화 등 구두표현에 의한 훼손인 slander로 나뉜다. Libel 피해가 일반적으로 더 크게 보상되는데, 글로 쓴 비방이 말로 한 비방보다 오래 남고 널리 전파되는 등 더 치명적으로 인식되고 즉흥적으로 내뱉기 쉬운 말보다 글이 더 고의성이 높다는 인식도 있다; William R. Bobbitt, *Exploring Communication Law*, Boston: Pearson Education, 2008, pp.106-108; Michael G. Parkinson & L. Marie Parkinson, *Law for Advertising, Broadcasting,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Philadelphi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p.260; Wayne Overbeck,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Mason: Thomson South-Western, 2005, pp. 114-116.

게 된다.<sup>11)</sup> 여기서 명예란 ①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 ②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인 내적 명예, ③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일컫는 명예 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는 외적 명예를 의미한다.<sup>12)</sup>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으로는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환원하자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제재와 구제 등에 있어서 이들 현행 법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현행 법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 헌법적 가치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개인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이중적 잣대로 인한 권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당사자 상호 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게시물은 일방적 게시중지 등이 가능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터넷 언론 등에서 퍼나른

보도 내용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지만 내용상 출처는 언론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법률이 오히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저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인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지향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포털사이트의 경우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의성은 크다 하겠다.

## II. 제도개관

### 1. 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 가.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즉 인터넷공간<sup>13)</sup>에서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 William T. Schiano, *CyberLaw: Text and Case*, Mason: Thomson South-Western, 2004, p. 345.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KISCOM 신고상담 08-1, 정보통신부, 2008, p. 3.

13)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인터넷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법률이 오히려 명예훼손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저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지향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

(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제70조에서 별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③ 위 각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9조<sup>14)</sup>로는 인터넷 명예훼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상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인바, 정보보호법 제70조는 형법 제309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으며,<sup>15)</sup> 따라서 형법 제309조가 규율하고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보호법 제70조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법리적 차별

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바, 특히 퍼나르기에 의한 명예훼손의 확산은 일반적인 현실공간의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변조물 등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순식간에 이를 본 네티즌들에 의하여 퍼나르기 등 불법행위를 통한 피해의 확산이 견잡을 수 없이 지속되어 어떠한 구체책으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16)</sup> 그 근원에는 ① 이용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적·정치적 보복에 대한 염려나 사회적 지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할 수 있는 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심리적 부담 없이 쉽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익명성(anonymity),<sup>17)</sup> ②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5월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5,877,395명에 이르고<sup>18)</sup> 그 신속성과

14)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 정 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p. 169.

17)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공개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하지만, 반면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그 남용의 위험을 생성하게 된다; Jessica L. Chilson, supra note 8, at 395.

18)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http://isis.nida.or.kr>) 조회 결과.

시·공간적 무제한성 및 엄청난 파급력을 보유한 인터넷의 특성인 전파성(transmittability)이 인터넷 명예훼손을 특징짓는 징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특질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이 ① 가해행위로서 명예훼손행위가 행해졌을 것, ② 명예훼손행위가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 ③ 명예훼손행위가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 ④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민법에 따르며,<sup>19)</sup> 이에 대하여는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의한 분쟁조정이 구제방안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 나. 인터넷 권리보호

정보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제44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sup>20)</sup>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의 입법정신이 투영된 것이며, 또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가져오는 표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법은 이를 정점으로 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조화하고 있다.<sup>21)</sup>

19) 특히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는바, 따라서 인터넷상 적시된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르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 물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보호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인 이용자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있다.

21)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에 한정하여 논의하려 한다.

다. 정보 삭제요청 등

정보보호법은 제44조의2에서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혹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sup>22)</sup>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법은 제44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임의조치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의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불법정보 유통금지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은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명예훼손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3)</sup>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sup>24)</sup>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의견제출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2 제6항 참조.

23) 다만, 해당 명예훼손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24)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보호법 제73조 제5호.

적으로 법률 제8867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더불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같은 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는바, 그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①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②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③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의 법적 성질은 이를 둘러싼 법제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사항이 된다.<sup>25)</sup> 다만, 여기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가운데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sup>26)</sup>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명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법 제44조의1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부터 제

25) 즉, 방송통신심의의 성격을 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작용법적·조직법적·절차법적 기제를 해석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합치적 규제법제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단초로 중요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이에 대하여 검열은 금지되는 것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헌법이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결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위반이 되어 그러한 법률은 효력이 없게 되지만,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표현의 내용에 관한 것이 바로 내용규제라 할 것이다.

26)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었다.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다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

39조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sup>27)</sup> 명예훼손분쟁 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sup>28)</sup>

결국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벌이 부과되는 형사적 국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sup>29)</sup>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해지 등과 같은 시정요구의 심의결정<sup>30)</sup> 그리고 심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불법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행정명령과 같이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함께 취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지만,<sup>31)</su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4조의4에 따라 자율규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가. 언론 등의 언론보도와 그 매개

지난 2005년 1월 27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같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27)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정보보호법 제44조의10 제3항.

28)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3호로 개정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1호로 개정된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존재한다.

29) 심의의 개시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용자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심의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 확인·결정 및 결정취소, 심의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가운데 선택적으로 심의결정을 한다.

31) 이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바, 그 법적 의의에 대하여는 류승훈,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제29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p.6~23. 참조.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해당 분쟁에 대한 구제 범위를 ‘언론보도의 매개(媒介)’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법률 제9425호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언론보도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아니면 서도 언론중재법상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매개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sup>32)</sup>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하며,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

#### 나.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보

32) 인터넷신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는바,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부<sup>33)</sup>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한편,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III. 발전방향

#### 1. 규범적 현황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보호법과 언론중재법

33) 언론중재법 제9조 (중재부) ① 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관련 제도에 있어서 차별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을 사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일간신문인 B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B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홈페이지에 이에 찬동하는 A가 게재한 게시물의 경우 피해자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sup>34)</sup>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sup>35)</sup>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sup>36)</sup> 이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형사특별법규인 정보보호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

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지녀야 하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sup>37)</sup> 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sup>38)</sup>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상태<sup>39)</sup>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sup>40)</sup> 이러한 측면을 특히 언론보도 등에 적용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제5조 제3항이라 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법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에 관한 논의와 연결할 개연성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E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운영자 D에 의해 게시된 정보가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회

3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3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체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 2824 판결.

3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3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38)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39)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40) 물론 이는 허위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 참조.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식적인 임시조치 남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원 C의 고충을 호소하는 전자우편 내용인 경우나 H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중소기업체 대표 F가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의뢰인 G가 작성한 경우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다를 뿐 인터넷 명예훼손에 의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C와 F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이트 E와 H에 대해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E와 H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혹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C·F 및 D·G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실질적 성립과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식적인 임시조치 남발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문제된다.<sup>41)</sup> 게다가 정보보호법 제44조의7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중국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불법성을 판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하므로 대중적 평가의 차단을 초래하고 사상의 공개시장론에 배치된다 하겠다.<sup>42)</sup>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척도가 될 것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며,<sup>43)</sup>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의 경우가 아닌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그 인용 여부를 판가

41)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예방하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의 해결을 위한 기준의 개발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념은 자유롭고 공개된 담론으로 사상을 표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이 부족할 때에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Jessica L. Chilson, *supra* note 8, at 417.  
42) 이로써 정부의 개입에 따른 위축효과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자유로운 표현체계의 핵심이 되는 전자정보매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See Laurence H. Trib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the 21st Century: New Technology Meets Old Constitutionalism*, Progress on Point 07-09, Washington, DC: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2007, p. 4.  
43) 이에 대하여는 拙稿, 방송통신심의의 성질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785-810. 참조.

름하는 기체가 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적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해당 명예훼손정보의 삭제 등을 신청하는 조정절차에서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으로 귀결되는 언론보도 등의 정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만을 조율대상으로 삼게 된다. 다만,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분쟁조정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게재한 기사가 J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판례는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

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sup>44)</sup> “포털사이트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 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포털사이트운영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여<sup>45)</sup>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언론매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인터넷신문과 구별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제17조의2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44)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45)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I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므로 J는 법정기한 내에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기사내용이 I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J·I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는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sup>46)</sup> 즉, 기사제공언론사의 원정보(原情報)에 따른 명예훼손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민사적 대처에서는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무관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이나 전자우편 제공 등의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은 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뿐이고 언론보도 등과 같이 해당 정보의 진실 여부에 따른 정정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형사적 대응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다루어진다.

## 2. 정책적 과제 논의

정보보호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은 아니면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행위의 주체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일 때 그 법적 책임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절차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한 중재도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관련 신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합목적적으로 제도적 이원화를 이룬 법적 방책이 구제대상자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타개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응하는 피해구제방안의 개발도 명예훼손 예방시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sup>47)</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단초를 언급해 본다.

첫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또는 신청의 이송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6)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인 A씨와 B씨가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표현만을 수정한 뒤 계속 보도하여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 기자협회보 2009년 8월 20일자 기사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4>>.

47)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David Grant, Defamation and the Internet: Principles for Online Defamation Law, Journalism Studies Vol.3 No.1, Routledge, 2002, p. 128.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원용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나 포털사이트가 주는 인터넷으로서 특성에 착안하여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보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피해구제로부터 격리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각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 또는 신청을 이송하도록 하는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면 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관할의 인터넷 명예훼손 역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일창구(同一窓口; single window)의 발상을 생각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의 조정신청할 대상 행위가 어떤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위원회에의 적합한 조정신청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권리침해에서 피해구제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침해신고와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건대, 특히 인터넷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기관 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므로 피해구제네트워크를 핫라인(Hot Line)으로 활용하

는 다각적 검토가 명예훼손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역기능 방지와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신속한 가구제(假救濟)를 피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假處分)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므로 명예훼손피해에 대한 구제로 충분치 못한 반면에 인터넷 명예훼손은 급속한 파급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판단컨대, 정보보호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반박내용의 게재가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정보에의 차단과 같은 임시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가구제로서 반박내용의 게재는 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선행적 요소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성으로 인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권과 같이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론권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sup>48)</sup> 또한 반박내용 게재에 대한 상대방의 재반박내용의 게

48)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외에서 해결하지는 것으로 언론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지는 것이다; 이재진,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9, pp. 268~270.

관할 위원회에 적합한 조정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구제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침해신고와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제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상의 자유시장인 인터넷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구조적 체제를 절차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구제의 필요성은 저감될 수밖에 없으며,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sup>49)</sup> 하는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운용되는 일반적 기능에서와 같은 정보 전파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보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IV. 에필로그

최근 네티즌(Netizen)과 매키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인 ‘네카시즘(NeCarthyism)’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판 마녀사냥이 인터넷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것이 현실인바,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침해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회복불능의 치명적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법적 대응의 요청도 그 까닭에서이다. 그리하여 온라인 폭력을 일삼는 이용자 개인의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sup>50)</sup>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승인하기에 이르는 형국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의 경계(boundary)인 인터넷은 무수히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이므로 이로써 매개되는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정보수용자는 적극적으로 표현행위를 주고받을 수 있어 공론의 장이 획기적으로 실질화되는바,<sup>51)</sup>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가운데 특히 인터넷의 관문(gateway)으로 여겨지는 포털(portal)의 경우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sup>52)</sup>

전통적으로 명예훼손법리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4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참조.

50) 여기서 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제반의 직무(役務), 즉 ‘Service based upon Internet’을 포괄하여 이해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검색, 인터넷 대화와 토론, 전자게시판, 온라인 게임·음악,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근간으로 하여 제공되는 제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용어라 하겠다.

51) Thomas C. Folsom, Defining Cyberspace: Finding Real Virtue in the Place of Virtual Reality, 9 Tul. J. Tech. & Intell. Prop. 76, 81-84. (2007).

52) 이에 관한 규제법적 검토에 대하여는 拙稿, 인터넷포털 규제입법의 현황과 과제, 인터넷법연구 제5권 제1·2호 통합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8, pp.133-152, 언론법적 측면에 대하여는 강경근,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108호, 언론중재위원회, 2008, pp. 33-44. 참조.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변화·발전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돌되는 기본권적 가치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그 특유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법적 정의를 무시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현행 정보보호법은 제44조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함으로써 명예훼손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포털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주의의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욱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존에 조리상으로 인정되던 작위의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에 따른 포털사이트운영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의 관건은 그 범위가 될 것이다. 여기서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이 없는 경우는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포털사이트운영자에 대한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는 동안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그 책임범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법률상의 주의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

는 만큼 귀책사유와 결과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제한적으로나마 불법행위책임을 감수함은,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과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의 존재에 비추어 포털사이트운영자의 영리적 행위와 비견되는 타인의 권리침해의 이익형량에 관한 문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의 개념 정의와 분야별 서비스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법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의 강화에의 특별법적 요인이 파악될 경우 법리에 충실하게 법규를 신설해야 할 것이며, 행정규제에 있어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자칫 중복규제로 과잉규제를 야기하거나 오히려 규제 공백으로 인한 입법불비를 양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적절한 규제내용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 명실상부한 법적 책임 제고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사법판단 이후<sup>53)</sup> 확산된 포털사이트에의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와의 이익안배가 요청되는 사업자의 권익보장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인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은 논의는 인터넷포털 관련 중사자 역시 기본권주체로서 국민이며 그 영업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과 함께 법정정책학적 검토에 있어서도 적정규제에 따른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적법절차원리의 투영이라는 이념적 원리가

53) 서울중앙지법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그 평석으로는 拙稿,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1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pp. 1~23. 참조.

54) Douglas W. Vick & Linda Macpherson, Anglicizing defama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36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33, 933-955 (1996).

적용되어져야 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55)</sup> 다만, 제공서비스의 기능과 관련하여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언론기관에 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반면, 언론에 준하는 지위에 놓여있지 않는 포털사이트운영자의 경우 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부에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 행정조사에 응해야 하며,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그 받은 사실을 공표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

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지도의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바, 결국 언론적 기능 보유 여부에 따른 실질적 평가에 따라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분배되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포털사이트운영자는 그 기능과 무관하게 인터넷의 산업적 측면에서 별도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선상에서 기능적 분산에 따른 고려를 총합적 조율이 가능한 방향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도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55) 오늘날 많은 법규는 정책 자체의 표현이기도 하고 정책의 시행을 보장하는 방편이기도 하며 정책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바, 법제도의 시행, 문제점 발견 및 모순 제거, 사후대책의 수립 및 그 영향의 평가 등에 걸친 법정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인터넷포털과 관련된 규제현황의 파악과 그 변용에 따른 변화의 판단으로서 법정정책이 헌법합치적인 적정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곧 현재까지 논의되어진 인터넷포털의 부작용에 대하여 입법적인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의에서 관련입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인터넷포털이 함유하는 매체적·기능적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형성되어 실효성 있는 법집행으로 매개되어야 함 역시 헌법상 설정된 통치권력 통제와 그 제를 같이 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총괄적 입법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